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김지남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경영수익사업과 문화시설,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목적 : 시장이 지정하는 경영수익사업과 문화시설,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복지,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
- 공단의 성격 : 법인
- 자본금 : 부천시가 전액 출자
- 정관 : 목적, 명칭, 자본금, 임·직원에 관한 사항 등 기재
- 등기장소 :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임원 : 이사장, 약간 명의 이사, 감사
- 사업 : 주차관리 업무와 불법주정차, 견인 및 관리업무, 복사골문화센터,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
- 사업연도 : 일반회계의 회계연도
- 감독기관 : 시장
- 감사대상 : 공단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제5조(정관)1항4호 자본금에 관한 사항 중 자본금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?	○ 행자부의 공단설립 표준안대로 작성하였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으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니다.

○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역은?

○ 600억 가까이 투입된 건물을 프로그램없이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으며 어느 교수님은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잘 활용하면 부천이 문화의 도시로 정착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

○ 구법의 행자부장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하면 법적 하자는 없는지?

○ 99년 4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. 지방공기업법 제49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까?

○ 행자부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등으로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 또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.

○ 주차관리요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지?

○ 일용직 요원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으며 이미 주차로 등 관리, 계도요원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승인해 주고 예산도 통과시켜 주도록 하자는 의견임.

나. 반대토론

○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조례를 승인받은 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집행부에 경고를 주어야 할 것임.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제5조1항4조의 자본금액 명시 및 경영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동조례안과 관련하여 대구, 부산의 시설관리공단을 사전 견학하고 사업내용을 청취한 바 있음.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22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12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구성인원이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시의 예산업무, 주차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,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인회계사, 세무사를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- 조례안 내용 중 이사회 구성원에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업무처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였음.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수정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14조(이사회) 본문중

제②항내용중 “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을”을 “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”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(이사회) ①(생략)	②이사회는 이사장, 시의 예산업무, 주차장 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,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	제14조(목적) ①(현행과 같음)	②.....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....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주차사업·문화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본금) ①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정관)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12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설립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2장 임원 및 직원

제7조(임원)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,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공단의 이사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·면한다.

③감사는 시장이 임·면한다.

④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·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이사장추천위원회) ①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시장, 시의회,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되,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②당해 공단의 임·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추천위원회는 시장에게 이사장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.

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임기 및 직무) ①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
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5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11조(임·직원의 겸업 금지)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12조(비밀누설 금지 등) ①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
제14조(이사회)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시의 예산업무, 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·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

과장,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
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이사회 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5조(이사회 의 참여제한)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
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6조(직원의 임·면)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·면한다.

제3장 사 업

제17조(사업) ①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
시장이 부담한다.

1.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
2. 노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
3.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
4. 북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
5.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6.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

②공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
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3조의 규
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
야 한다.

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한다.

제18조(경영평가)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
수시로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4장 재무회계

제19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20조(사업계획 및 예산)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
정한 후 사업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
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②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결산)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2조(시유재산의 사용)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23조(계리의 원칙) ①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.

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정한다.

제24조(잉여금 처리)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여유금의 운용)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.

1. 국채, 지방채의 취득
2. 금융기관에의 예입

제5장 감 독

제26조(감독)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임·직원의 급여,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3.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7조(보고 및 검사)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제28조(권한의 위탁)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파견된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·관리한다.

제31조(공인의 비치) ①공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

제3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단설립경비)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설립자인 시장이 부담한다.

제3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조(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) 공단의 최초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